

학점인정기관용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2018. 5.



한국보육진흥원

1 보육교사 2급 자격 기준

□ 대상별 적용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한 자 : **(편·재)입학년도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학위취득일 기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편입·재입학한 사람의 경우, 편입·재입학한 동학년생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 기준 적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평생교육법」 제 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 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영남 사이버대학, 세계사이버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의 교과목 이수 기준

구분	2014.3.1.~ 2017.12.31. 학위취득자	2018.1.1.이후 학위취득자 부터
교과목 이수 기준	6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개정, 2014.3.1.시행)	보건복지부령 제 392호 (2016.1.12.개정, 2016.8.1.시행)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대상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6주, 240시간)에 따라 이수한 경우로 인정 - 대상교과목: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2 교과목 및 이수학점

□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변경 내용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교사 인성 등 3개 영역
① 보육필수(6개 과목) ② 발달 및 지도(1과목 이상) ③ 영유아교육(6과목 이상) ④ 건강·영양 및 안전(2과목 이상) ⑤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1과목 이상) ⑥ 보육실습	① 교사인성 (2과목 필수) ② 보육지식과 기술 (9과목 필수, 4과목 선택) ③ 보육실무(2과목 필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 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 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전체	3개영역, 17과목(51학점)이상		

※ 파란색 교과목은 대면교과목으로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단, 「보육실무영역」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 보육실습 기준

구분	2014.3.1.~ 2017.12.31. 학위취득자	2018.1.1.이후 학위취득자 부터
실습기간	4주, 160시간 (야간대학 등의 경우 분할실습 가능)	6주, 240시간(2회 분할실습 가능) ※ 2018.1.1.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기준 4주 160시간 적용
실습기관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3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2014.3.1.~ 2017.12.31. 학위취득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행)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 등록시 인가증,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교사 1인당 3명 이내 실습지도확인서 원본,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유 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서 원본 제출
2018.1.1.이후 학위취득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행)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 대면교과목 확인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 등록시 인가증,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교사 1인당 3명 이내 실습지도확인서 원본,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유 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서 원본 제출 ※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사이버 또는 원격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 득하는 경우 성적증명서에 '대면' 교과목 기준 충족 시 '대면' 으 로 표기되어야 함. 미 표기시 '대면교과목 확인서' 제출

4 보육실습 유의사항

- 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미인증, 인증종료, 인증취소 사유 발생된 어린이집에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 必)
 - ※ 2회 분할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분할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인증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실습년도 별로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실습생 미등록시, 실습년도에 맞는 확인서 양식을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평일(월~금요일)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나 어린이집의 가정학습기간, 실습생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제출